

CR 2003-06

OECD의 기업연금 재정안정화 논의와 시사점

2003. 7

보 험 개 발 원

CR 2003-06

CEO
Report

OECD의 기업연금
재정안정화 논의와 시사점

2003. 7

이 태 열

보 험 개 발 원

CEO Report는 보험산업과 관련된 현안과제를 집중 분석하여, 보험회사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

< 목 차 >

I. 검토 배경	1
II. OECD 주요국의 기업연금 재정 실태	2
1. 미국	
2. 네덜란드	
3. 아일랜드 · 호주 · 러시아	
III. 기업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6
1. 기본 방향	
2. 각출 측면	
3. 급부 측면	
4. 공시 · 회계 · 과대적립	
5. 우리나라 퇴직금제도와 비교	
IV. 시사점	10

I. 검토 배경

- 최근 주요 선진국에서는 연금 지급 수준이 보장된 확정급부형(DB : defined benefit)기업연금¹⁾ 제도의 재정부실이 심각한 경제·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주가하락에 따른 투자손실, 기업 파산의 증가 등에 따른 적립감소가 기업연금 재정부실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인구구조의 고령화 등 기업연금 운용 여건의 구조적인 악화도 지속되고 있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함.
- 2003년 6월 OECD보험회의에서는 기업연금의 과소적립(underfunding) 상태와 이의 해결을 위한 재정안정화 방안을 논의함.
 - 미국, 네덜란드, 영국 등이 자국의 사례를 간략히 소개하고 회원국들이 이에 대해 논의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음.
 - 그 외에도 일반적인 관점에서 과소적립 문제의 해결과 연금 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방안들이 논의됨.
-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부 주관으로 기업연금제도 시안이 작성 중에 있으며 실시 예정일(2004년 7월)이 임박한 만큼 보험사들의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할 것임.
 - OECD 회원국들이 확정각출형(DC : Defined Contribution형 기업연금²⁾보다는 확정급부형(DB형) 중심으로 기업 연금을 운영하는 것을 선호함에 주목하여 제도 도입시 이에 대한 내용을 정책 건의하고 상품개발 등 후속 준비를 하는 것이 요청됨.

1) 가입자가 받을 급여가 사전에 정해져 있는 기업연금을 의미함. 연금수급자의 입장에서는 받을 급부의 수준이 미리 정해져 있어 안정적이나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연기금 부족시 이를 보충해야하는 위험부담이 있음.

2) 고용주의 각출규모가 사전에 결정되어 있고 연금급부는 연기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기업연금을 의미함. 기업의 입장에서 일정한 보험료만 납입하면 추가적인 책임이 없다는 점에서 위험부담이 없으나 연금 수급자의 입장에서선 급부 규모가 연기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불안정해지는 위험부담이 있음.

II. OECD 주요국의 기업연금 재정 실태

1. 미 국

< 기업연금 환경 악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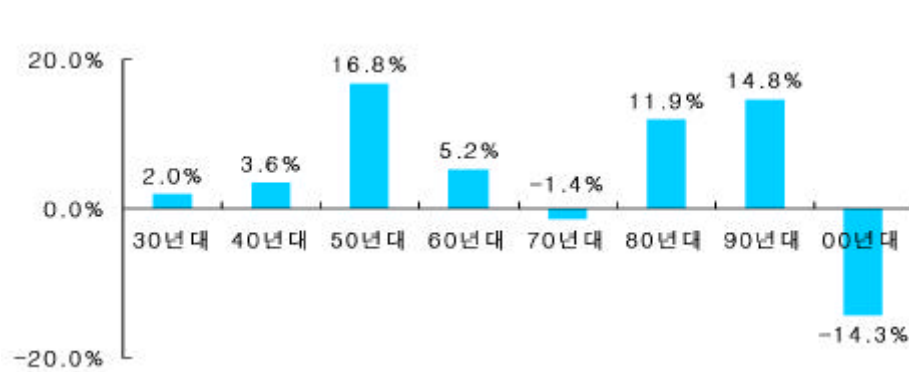
- 인구구조, 노동시장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미국의 DB형 기업연금 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 경쟁 심화 및 노동시장 유연성 상승으로 퇴직 연령이 하락하고 있어 기업 연금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반면, 평균 수명의 상승으로 퇴직 후 수명은 크게 늘어나고 있어 연금의 지급 부담이 확대되고 있음.
- 최근 주식시장 위축으로 연기금의 자산 운용 수익률이 예정이율을 크게 하회하는 경우가 속출함.

< 미국의 평균퇴직연령과 퇴직후 생존기간 >

	1950	1955	1996	2000
평균 퇴직연령		66.9		62.0
퇴직후 평균 생존기간		11.5		18.1

자료 : 본고의 모든 자료는 OECD 발표 자료로부터 발췌

< 미국 주식시장의 연평균 수익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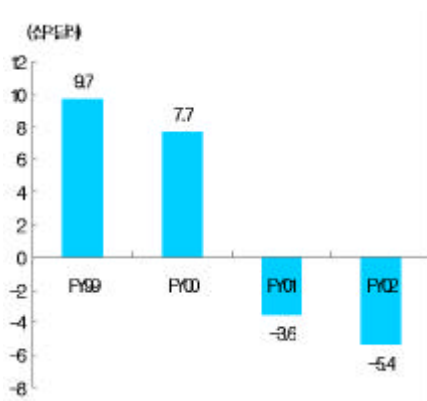


주 : 00년대는 2003년 4월까지 감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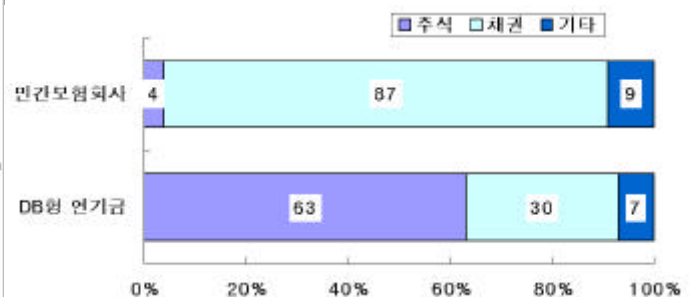
< DB형 연금금 재정 악화 >

- 지급불능 상태가 된 기업연금에 대한 대지급이 증가하면서 미국 연금보험공사 (PBGC : Pension Benefit Guaranty Corporation)의 재정은 급속히 악화됨.
 - 파산한 기업에 대한 연금 대지급이 증가하면서 연금보험공사 FY02년 기준 자산이 \$ 26.0억 그리고 부채가 \$ 31.4억으로 나타나 부채가 자산을 \$ 5.4억 초과함.
 - 90년대 주식시장 호황에 따른 DB형 연금금들의 무리한 주식 편입도 DB형 연금금 부실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됨.
 - DB형 연금의 신규 가입자가 감소하면서 재정 문제가 더욱 심각해짐.
 - 90년대 주식시장 장기 활황에 따른 확정각출형(DC형 : defined contribution) 기업연금의 비중 증가로 DB형 기업연금 수령자가 연금기여자의 수를 2003년 이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됨.

<PBGC의 순자산 추이>



<자산 포트폴리오 비교(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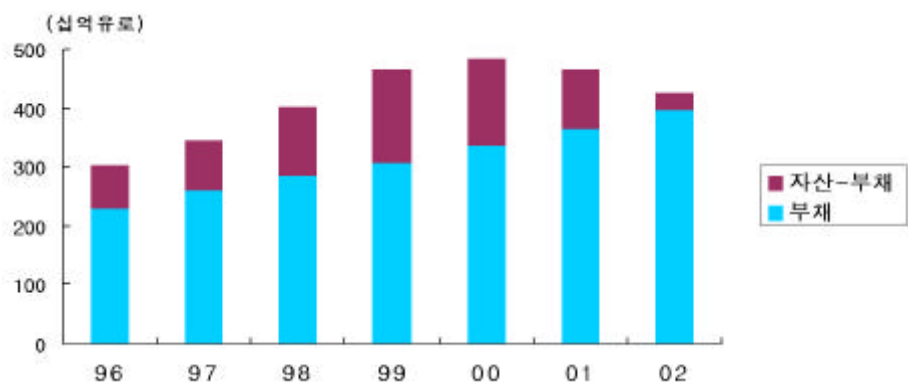


2. 네덜란드

< 기업연금 재정 악화 >

- 이중적 연금 계약구조와 취약한 공시 규정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에 따라 네덜란드의 기업연금의 재정은 최근 크게 부실해짐.
 - 연금 계약이 기업에게는 확정각출형(DC형)으로 근로자에게는 확정급부형(DB형)으로 여겨지는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연금 재정의 부족이 발생할 경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부작용이 있음.
 - 공시 규정이 약해 연금의 재정 부실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문제의 조기 발견 및 대처가 어려움.
 - 기업과 연금관리자는 모두 연금의 재정 부실을 숨기고자 하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산이 부채를 약 15 20% 수준 상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9년 이후 악화되기 시작하여 2002년에는 10%이하로 급속히 축소됨.

< 네덜란드 기업연금의 자산과 부채 추이 >



3. 아일랜드 · 호주 · 러시아

- 아일랜드와 호주에서도 일부 기업연금이 과소적립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러시아는 전통적인 노동연금의 재정부실화가 심각해지고 있어 연금 개혁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
- (아일랜드) 전체 기업연금 중에서 25%에 해당하는 연기금이 과소적립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호주) 2002년 9월 기준 자산이 부채 규모의 90%에 미달되는 연기금이 전체의 7%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러시아) 전통적인 연금인 기초 노동연금과 보험형 노동연금은 부과방식(pay as you go)³⁾으로서 최근 재정 안정성이 크게 취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2013년에는 연금수급자가 근로자의 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연금개혁이 불가피한 실정임.

< 러시아의 연금 체계 >

종 류	형 태	재 원
기초 노동연금	부과방식	조세
보험형 노동연금	부과방식	기업 각출
적립방식 노동연금	확정각출형	기업 각출 + 투자수익률
기업 연금	확정각출형	기업 각출 + 투자 수익률

주 : 기초 및 보험형 노동연금이 러시아 연금제도의 핵심이며 적립방식 노동연금과 기업연금은 부가적인 제도라 할 수 있음

< 러시아 근로자와 연금수급자의 상대적 규모 전망 >

년 도	2001	2005	2008	2013	2018
근로자 VS 연금수급자	1.3:1.0	1.2:1.0	1.1:1.0	1.0:1.0	0.9:1.0

3) 매년 연금 급여와 기여가 균형을 이루도록 보험료를 부과하는 제도임. 매년 재정계산이 완료되는 만큼 운영상 간편하나 세대간 재정부담이 이전되는 문제점이 있음. 공적연금에서 주로 채택하는 제도임.

Ⅲ. 기업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1. 기본 방향

- 최근 기업연금 개혁의 기본 방향은 충분한 급부를 보장하기보다는 연기금 자체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순수 확정각출형(DC형)의 경우 사회보장기능이 취약한 만큼 가능한 한 확정급부형(DB형)을 중심 제도로 운영하면서 연기금 재정의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 기업연금 개선의 기본 방향임.
 - 따라서 ‘급부의 축소, 각출의 증가’라는 기본틀 속에서 어떻게 기업의 책임있는 참여를 유도하는가가 기업연금 개선의 핵심과제임.

2. 각출 측면

- 보험료를 인상하고 과소적립분의 적극적인 해소를 압박하는 등 각출 요구를 강화하는 한편, 최소적립 의무를 완화하고 적립부족의 상각기간을 유예하는 등 기업 편의를 배려하는 정책도 강구되고 있음.

< 각출 강화 >

- 보험료율 인상 등 각출 규모 확대 및 적립 부족에 대한 상각 요구가 기업연금 개선의 주된 내용임.
 - (미국, 네덜란드) 예정이율의 하향 조정을 통해 보험료율을 인상하여 기업연기금에 대한 각출 규모를 확대시킴.
 - (아일랜드) 기업연기금을 청산가치로 평가하고 이에 따른 부족분을 해소할 자구계획을 기업에게 요구한 상태임.
 - (호주) 기업연기금의 과소적립분에 대해서는 3년의 시한을 주고 해결을 요구하고 있음.

< 유연성 부여 >

- 주로 최소적립제도의 탄력적인 운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 (영국) 기업주에게 부과되는 최소적립기준을 완화하여 기업이 기업 연금의 유지를 포기하지 않도록 독려하고자 함.
 - － (미국) 다양한 조건에 따라 과소적립분의 상각기간에 유연성을 부여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의무 이행을 유도함.
 - 산업별 적립부족의 상각기간 세분화 : 산업의 특징에 따라 적립 부족분에 대한 상각기간을 세분화하여 보다 현실적인 재정 확보 방안을 강구함.
 - 단체계약 유도 : 개별 기업 단위의 연금계약보다는 단체 연금 계약을 유도하여 기업연금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적립부족의 상각기간에도 유연성을 부여하고자 함.

3. 급부 측면

- 예정이율을 하향 조정하고 급부 기준을 평균임금으로 조정하여 급부 규모를 축소하는 한편, 연금의 지급보장을 위한 기금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음.

< 급부 축소 >

- 기업연금의 급부 측면에 있어서는 예정이율의 인하와 급부 기준의 변경을 통해 지급액을 축소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 (미국) 예정이율을 장기회사채 금리에서 30년 재무부채권 금리로 인하함으로써 적립 확대 및 급부 축소를 추진함.
 - － (영국) 예정이율의 상한선을 두어 기업이 과대 급부를 보장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함.

- (네덜란드) 급부 산정의 기준을 최종 임금에서 평균 임금으로 전환하여 적립 금액에 비해 과도한 급부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함.

< 급부 보장 기능 확대 >

- 연금의 지급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적립방식의 구성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됨.
 - (영국) 미국의 연금보험공사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연금보장기금 (Pension Protection Fund)의 설치를 추진하여 수급권의 보장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 (러시아) 재정안정성의 보완을 위해 적립방식(funded)⁴⁾ 노동연금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며, 기업연금도 적립방식의 비중 확대를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음.
 - 기업 연금 : 이미 일부 또는 전체의 급부권이 확정되지 않은 근로자를 중심으로 기업연금의 의존도를 높이도록 유도할 계획임.
 - 노동 연금 : 남성을 기준으로 할 때 53 66년생 근로자와 67년생 이후 근로자로 나누어 적립방식의 비중을 확대하고자 함.

4. 공시 · 회계 · 과대적립

- 투명한 공시의 필요성, 회계 기준 적용의 현실성 제고 그리고 과대적립제도의 적절한 활용에 대한 논의도 있었음.
 - 공시 강화 : 네덜란드의 경우 공시 규정의 강화를 통해 기업 연금 재정부실을 은폐할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문제점을 조기 발견하고 대처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4) 연금기금을 적립하여 이의 운용수익을 감안하여 연금급부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세대간의 재정부담이 이전되지 않는 장점이 있으나 기금운용의 규모가 커지면서 운용상의 부담이 많다는 단점이 있음.

- 자산부채 방식의 보완 필요 : 자산 부채 방식의 도입이 확대되고 있으나 기업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에 대한 보다 세밀한 평가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연기금의 회계상 평가 결과가 같더라도 종업원의 평균 연령, 연기금 부채의 구조에 따라 적립규모를 차별할 필요성이 있음.
- 과대적립의 문제점 대처 : 적립 부족으로 연기금이 부실화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기업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과대한 적립을 하는 행위에도 대처해야 함.
- 과대적립에 대한 조세 혜택은 기업의 안정적인 각출을 위해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 초과 적립된 부분의 처리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기업연금이 조세 회피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함.
- 네덜란드의 경우 전체 기업연금의 13%에서 30% 이상의 과대적립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업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OECD의 논의 >

		개 선 안
각출	각출 강화	예정이율 인하로 각출 확대 (미국, 네덜란드) 적립부족분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요구 (아일랜드, 호주)
	유연성 부여	최소적립기준 완화 (영국)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적립부족 상각기간 조정 (미국) 기업 단체 연금 계약에 대한 적립부족 상각기간 연장 (미국)
급부	급부 축소	급부의 기준을 최종임금에서 평균임금으로 조정 (네덜란드) 예정이율 인하 또는 상한선 설정 (미국, 네덜란드, 영국)
	급부 안정성	적립방식 노동연금 및 기업연금에 대한 의존도 확대 (러시아) 연금보장기금 설치 검토 (영국)
기타	공시 강화	정기적인 투명한 공시 (네덜란드)
	회계 문제	회계기준의 적용시 기업의 특성에 따른 차별성 감안
	최대적립	적절한 최대적립제도의 활용으로 조세회피 가능성 억제

5. 우리나라 퇴직금제도와 비교

- 우리나라의 퇴직금제도는 OECD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업연금 개선방향과 비교할 때 그 기본틀에서 큰 차이가 나고 있음.
- － (각출) 퇴직금제도는 기업에게 있어 최종적인 지급 의무만 있고 사내적립과 비교할 때 사외적립시 부여되는 세제혜택도 제한적이어서 일반적으로 사내유보되어 유동성으로 활용되고 있음.
 - OECD 주요국의 경우 사외적립에만 손비처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연기금의 부채규모를 초과하는 과대 적립에 대해서도 일정한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인하고 있음.
- － (급부) 최종임금을 기준으로 한 일시금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 「퇴직금 우선 변제권」에 대한 위헌 판결로 기업 도산 시 지급보장 기능이 매우 취약한 상태임.
 - OECD의 개선 방향은 급부를 평균 임금 기준으로 하여 합리화시키는 반면, 연금 지급에 대해서는 공적 보장을 강화하고 있음.
- － (공시) 사실상 사적 제도로서 퇴직금의 지급여력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공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우리나라 퇴직금제도와 OECD 개선 방향 >

	퇴직금	OECD 개선 방향
각 출	- 기업 임의 · 사실상 사내유보	- 기본적으로 사외 적립 · 과소적립에 대한 상각 의무 · 상각기간에 대한 유연성 부여 · 과대적립제도의 적절한 활용
급부 기준	- 최종 임금	- 평균 임금
지급 보장	- 우선변제권 없음	- 연금보장기금 등 제도적 보장 고려
공 시	- 공시 의무 없음	- 정기적이고 투명한 공시의무화

IV. 시사점

- OECD의 제도 개선 논의 방향은 확정급부형 기업연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험사에게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OECD 주요국의 기업연금은 기본적으로 확정급부형이며 확정각출형의 경우에도 미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정한 예정이율을 보장하는 사실상 보험상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이는 기업연금 시장에서 보험사가 타금융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함.
 - 확정급부의 성격을 갖는 기업연금 상품의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 도입과 관련한 보험사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할 것임.
 - 적절한 예정이율에 의한 각출과 급부 규모가 설정되어야 함.
 - 지급을 보장하는 공적기금의 설립도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과소 및 과대 적립과 관련한 적절한 해소 및 조세 규정을 통해 연기금의 안정성을 제고하여야 함.
- 보험사는 기업연금 상품이 기업의 가입 조건을 중심으로 차별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야 할 것임.
 - 기업연금은 기본적으로 수급자인 근로자보다는 적립의 주체인 기업과의 계약이라는 기업 중심적인 인식이 필요함.
 - 기업연금 상품이 급부조건뿐만 아니라 적립(보험료 납입)과 관련된 다양한 조건에 의해 차별화될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기업 또는 해당 산업의 특성 그리고 단체 계약 여부 등에 따른 적립 조건의 차별화가 마케팅의 중요한 요건이 될 수 있을 것임.
 - 연금 적립자인 기업에 대한 정보의 축적과 분석에 기초한 기업 연금 상품의 개발 및 마케팅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CEO Report 2003-06

OECD의 기업연금 재정안정화 논의와 시사점

발 행 일	2003년 8월 19일
발 행 인	임 재 영
편 집 인	오 영 수
발 행 처	보 험 개 발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인 쇄 소	(주)유성사
	대표전화 2268 - 0676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연구소
연구조정실(☎368-4163)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